

# Public Charge

## 영양혜택과 정부구호 대상자: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

식품 영양 서비스를 통해 영양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로는 이민자가 “정부구호 대상자(Public Charge)”가 되지 않습니다. 즉, 미국으로 온 이민자는 식품 영양 서비스로부터 푸드 스탬프, 여성, 유아 및 어린이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(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, Infants and Children - WIC) 혜택, 무료 또는 할인 가격의 학교 급식 또는 기타 영양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거나 입국 또는 영주권 발급을 거절 당하지 않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주소를 방문해 주십시오.

[www.fns.usda.gov](http://www.fns.usda.gov)

또는

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없을 경우, 무료안내 전화번호인 **1-800-221-5689** 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.

*USDA는 균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입니다.*

Korean